

해외환경규제동향



‘해외환경규제동향’은 환경부와 전경련이 함께 운영하는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TEN)’의 월간 뉴스레터입니다

Monthly Newsletter VOL.22



13개 EU 주요 교역 대상국, REACH 대응 공조체제 구축

- 유럽연합의 2차 독회 앞두고 회합 열어 법규정 완화 요구하는 공동성명서 발표 -

미국 등 EU의 최대 교역 파트너들이 EU가 추진 중인 신화학물질관리정책(REACH) 대응 공조체제를 구축했다. 지난 6월 8일, 미국을 비롯해 한국, 일본, 호주 등 EU 주재 13개국 공관 대표들이 참석한 회의가 EU 주재 미 상공회의소(AmCham EU) 주최로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렸으며, 이들은 국제교역에 대한 REACH 잠재적 저해영향 감소를 위해 법안 수정을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들 13개국은 REACH 적용범위 재검토 등 완화된 법규 제정을 EU 측에 요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이들은 유럽연합의 1차 독회 후 채택된 수정안 그대로 REACH 제정이 추진될 경우, 개발도상국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개도국 중소기업의 비용부담 문제에 커다란 우려를 나타냈다. 규제절차 및 이행준비에 있어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했다. 또, 좀 더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기초한 승인절차를 도입함으로써 시장경쟁 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EU 측에 요구했다. 이들은 유럽의회가 REACH(안)에 대한 1차 독회 후 수정안을 통해 요구한 유해화학물질 대체 의무화 규정에 대해 “명확한 환경편익도 없이 불필요하게 시장혼란만 야기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EU 대표도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의회에서 C. Boyden Gray EU 주재 미 대사는 “EU측이

REACH 제정과정에 제3국이 제기하는 여러 가지 우려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Gray 대사는 “정부 규제 이행을 위한 비용부담으로 인해 기업은 해당 물질 및 제품 생산을 중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당 물질 및 제품이 시장에서 밀려난다고 해서 환경목표가 달성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즉, 좀 더 적은 양의 화학물질이 유통된다고 해서 이로 인한 환경영향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세계야생동물기금(WWF)은 “이들 국가들이 제기하는 우려는 이미 낡은 주장이며, REACH를 통해 좀 더 충분한 화학물질 안전정보가 확보되어 오히려 개발도상국에게 현저한 편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이러한 주장을 일축했다.

주요 교역 상대국들이 연합해서 EU의 계획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REACH 규정에 대한 유럽연합의 2차 독회를 앞두고 미국이 주도한 이번의 13개국 공조노력이 향후 REACH 제정작업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공동성명서에 서명한 국가는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롯해 남아공, 말레이시아, 멕시코, 브라질, 싱가포르, 이스라엘, 인도, 일본, 호주, 칠레, 태국을 포함 13개국이다.

출처 | 미 상공회의소, WWF 등

CONTENTS

헤드라인

1

13개 EU 주요 교역 대상국, REACH 대응 공조체제 구축

해외동향

2

- 1 개정된 사무기기 에너지스타 요건에 동작성 소비전력기준 포함
- 2 CEFIC, REACH 대응지원 서비스 제공 기관 설립
- 3 프랑스, 자동차 CO₂ 배출 등급표지 부착 의무화
- 4 일본, 에코드라이브 보급촉진 행동계획 마련
- 5 미 캘리포니아판 RoHS 적용대상 확대 법안 하원 통과

전문가 리포트

5

EU 회원국별 RoHS 입법화 및 단속 기관

주요단신

7

- 1 미국, 6월부터 디젤연료의 황 함량 기준치 15ppm으로 대폭 강화
- 2 일본 JEITA, 무연땜 실용화 검토 성과 보고회 개최
- 3 HP, “폐기전 재활용 비용 예상보다 적다”
- 4 UNEP, 국제 환경협약 준수이행 위한 매뉴얼 공표

관련 국제회의 정보

8



개정된 사무기기 에너지스타 요건에 동작시 소비전력기준 포함



지난 5월 초 미국 연방환경청 (EPA)은 복사기, 팩시밀리, 프린터 및 스캐너를 포함하는 사무기기에 대한 에너지스타 요건(Version 1.0 Energy Star specification for imaging equipment)을 개정·공표했다. 기존의 절전모드(low power mode) 에너지 효율 기준 뿐만 아니라 해당기기 동작시 소비전력에 대한 기준을 처음으로 포함한 이 개정 요건은 2007년 4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 요건을 공표하면서 EPA 측은 새 요건이 일상생활에서 거의 매일 사용되는 사무기기의 에너지 효율을 한층 더 촉진하게 됐으면서, 관련 업계가 제품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리더십을 보여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새로 개정된 요건은 시장현황 조사결과, 제품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유도하는 에너지스타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관련 기술이 발전한 결과에 따른 조치다. EPA는 계속해서 해당 제조업체가 제품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현재 생산되는 동일 품목 기기 중 최상위 수준의 에너지 효율을 보이는 제품에만 에너지스타 인증이 부여될 것이고, 해당 요건을 만족하는 제품은 기존 모델에 비해 평균 약 30% 정도 에너지소비 절감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EPA는 밝혔다.

사무기기는 미국 내 전력소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미국 내에서만 약 2억7천5백만대 정도가 사용되고 있으며, 올 한해 이들이 각 가정 및 사무실에서 소비하는 전력은 미국 총 전기소비량의 약 2%에 해당하는 5백억 KWh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출처 | 미국 EPA



CEFIC, REACH 대응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설립



EU의 새로운 화학물질관리정책 REACH가 내년 중반쯤 발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그 제정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관련업계의 발 빠른 REACH 대응 준비가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유럽화학산업협회(CEFIC, European Chemical Industry Council)가 지난 5월 17일 기업의 REACH 대응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ReachCentrum 설립 계획을 발표해 관련 기업의 활용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REACH가 내년 중반쯤 발효된다고 할 때, 본격적인 법규 이행을 위해 관련 이해관계자는 1년여의 준비기간을 남겨두고 있다. 관련 기업에게 REACH는 향후 10~15년간 그 이행을 위해 많은 투자 및 노력을 기울여야 할 규제로, 최소 3만종의 화학물질에 대해 등록절차를 밟아야 하고, 이 중 일부 화학물질의 경우 평가 및 승인절차까지 거쳐야 할 것이다. ReachCentrum은 CEFIC이 설립하는 REACH 이행 전문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화학물질 공급망상의 모든 기업이 REACH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만족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립된다. 즉, 기업의 REACH 이

행시 공급망상에서의 준비작업에서부터 법규 이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요구되는 ▲ 법규 요구사항 이행 컨설팅(help desk), ▲ 컨소시엄 관리, ▲ 화학물질 등록 및 승인 신청서류 제출 대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CEFIC측은 업종단체로서 제공하는 일반 서비스는 회원사의 경우 무료로 제공하고, 고객별 맞춤형 서비스의 경우 유료 서비스로 운영할 계획이다.

유럽 내 2만7천개 회원을 대표하는 화학산업단체로서 CEFIC은 그간 산업계를 대표해 실행 가능한 REACH 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법규 제정작업에 참여해 왔다. 특히, EU 집행위원회가 REACH 실행 가능성 평가를 위해 진행했던 SPORT(Strategic Partnership on REACH Testing) 프로젝트(2004.10~2005.7)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등 지난 몇 년간 REACH 관련 전문성을 키워온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ReachCentrum 설립을 통한 규제대응 기업 컨설팅 서비스 제공 계획을 발표한 자리에서 CEFIC의 Alain Perroy 국장은 "기업들의 법규 이행에 이러한 CEFIC의 전문성을 활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ChemSpec 유럽전시회 기간인 6월 14일에 정식 출범예정인 ReachCentrum은 초기 몇 달



동안은 Help Desk 서비스 운영에 집중하고 차츰 제공 서비스 분야를 넓혀갈 방침이다. CEFIC은 이러한 서비스가 규제당국의 필요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기업의 해당 규제 이행에 적합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EU 집행위 및 주무당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출처 | 유럽화학산업협회(CEFIC)

▶ **SPORT 프로젝트** : CEFIC의 요청에 의해 EU 집행위원회, 일부 회원국 및 관련 산업계(CEFIC, UNICE, UEAPME 및 DUCC)가 참여해 REACH 실행가능성을 평가한 시범 프로젝트로 2004년 10월부터 2005년 7월까지 진행



프랑스, 자동차 CO₂ 배출 등급표지 부착 의무화

지난 5월 초, 프랑스 생태·지속가능개발부(Ministry of Ecology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의 Nelly Olin 장관은 향후 새롭게 출시되는 모든 차량에 대해 연간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 정보를 등급화해 표시한 라벨 부착을 의무화하는 자동차 CO₂ 배출 등급표시제도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2006년 5월 10일 이후 판매되는 모든 신차는 해당 라벨을 차량에 부착해야 한다. 이 등급표시제도는 프랑스 국내 석유소비량 감축과 에너지 해외 의존도 감소 및 기후변화 대응차원에서 추진되는 시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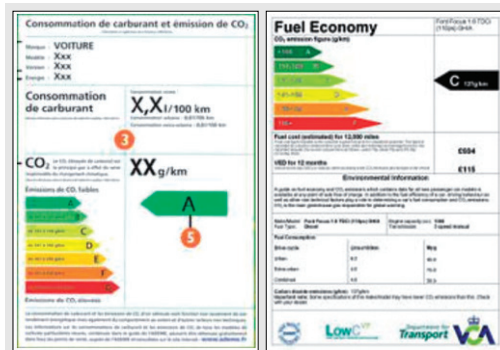
이 차량 라벨에는 프랑스에 판매되는 모든 신차에 대해 주행거리 1킬로미터 당 CO₂ 배출량(g/km)을 A부터 G까지 7개 등급으로 표시하게 된다. EDIE (environment data interactive exchange)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이러한 라벨링이 소비자에게 차량의 환경성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메이커의 차량 환경성 개선노력을 촉진하는 유인책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Olin 장관은 그동안 냉장고 및 세탁기에 대해 실시해 온 에너지 효율 등급표시제도가 제조자들로 하여금 A 또는 B 등급에 해당하는 최상위 에너지 효율 제품을 공급하도록 유도한 최근의 시장현황을 사례로 들면서, 자동차 분야에서도 유사한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05년 판매된 프랑스 차량의 평균 CO₂ 배출량은 152g/km 정도로, EU 전역 평균인 160g/km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이는 이번의 등급표시 제도 도입을 통해 한층 더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U 차원에서 승용차 연비라벨링 지침(1999/94/EC)에 따라 승용차에 대해 연료 소비 및 CO₂배출량을 표기한 연비라벨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프랑스 제도는 연비 및 CO₂배출 수준을 등급화하여 표시토록 하고, 그 적용 대상을 모든 신차로 확대한 것이다. 관련해서, 영국은 자동차 메이커와의 자발적 협약 체결에 따라 '저탄소차량 파트너십(LowCVP, Low Carbon Vehicle Partnership)'에서 동일한 내용의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프랑스는 자발적 협약에 근거한 영국제도와 달리 강제제도로 실시하는 것이다.

LowCVP는 2003년에 영국정부가 도로교통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방안 논의를 위해 설립한 조직이다.

한편, 유럽의 자동차메이커들은 2008년까지 차량의 CO₂ 배출을 140g/km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자발적 협약을 EU 집행위와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이



△ 프랑스의 해당 라벨

△ 영국 LowCVP의 라벨

러한 자발적 협약체결의 성과는 지지부진한 것이 현 상황이다. 이에, 환경단체는 업계의 자발적 약속을 신뢰할 수 없다고 밝히고, 의무준수를 강제하는 조치 없이는 현저한 오염 배출 감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경고한 바 있다. Olin 장관은 차량의 CO₂배출을 줄이기 위해 업계 자발적 노력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그간 이러한 환경단체의 주장을 지지해왔다. 또한, 프랑스는 EU 정부에 유럽 자동차메이커의 CO₂ 배출저감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강제조치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같은 프랑스의 강제 CO₂ 배출 등급표시제도가 앞으로 EU 전역으로 확대·시행될지 주목된다.

출처 | 프랑스 생태·지속가능개발부, Low Carbon Vehicle Partnership



일본, 에코드라이브 보급촉진 행동계획 마련

일본 4개 정부부처(경찰청,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및 환경성)가 공동으로 '에코드라이브' 보급·촉진을 위해 관계 부처 및 관계기관이 중점 추진해야 할 사항들을 포함한 '에코 드라이브 보급촉진 행동계획'을 지난 6월 9일 발표했다.

일본은 교토 의정서에 따라 1차 이행기간(2008~2012년)내에 온실가스 6%를 감축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지구온난화 대책 추진법'에 근거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정하고, 온난화 대응차원에서 2004년 추진한 시책의 평가·재검토 성과로서 작년 4월 '교토 의정서 목표달성 계획'을 작성하고 각의 결정한 바 있다. '자동차로 인한 환경부하 저감을 위한 친환경적인 자동차의 사용'으로 정의되는 에코드라이브는 이 계획하에 추진되고 있는 시책이다.

이날 발표된 행동계획은 교토 의정서 1차 이행기간 동안 국민 의식을 향상시키고 에코드라이브를 충실히 보급·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2006~2008년까지 3년 동안 정부, 자치단체, 관련 단체, 제조 사업자, 수송 사업자 및 드라이버가 행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 에코드라이브의 정의, 효과 지표 등의 확정, ▲ 국민운동으로서 에코드라이브 보급·개발 활동 실시, ▲ 에코드라이브 지원 장치의 보급 촉진, ▲ 에코드라이브 평가시스템 확립, ▲ 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와 제휴를 통한 효과적 추진, ▲ 에코드라이브 보급·추진에 필요한 조사 실시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행동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구체적 사업의 진행상황은 매년 추적조사를 통해 검토·확인할 예정이다.

출처 | 일본 환경성



미 캘리포니아판 RoHS 적용대상 확대법안 하원 통과

유해물질 사용 제한 적용대상 전기전자제품의 확대를 제안한 미 캘리포니아주의 '유해물질 제한 확대법안(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Extension, AB 2202)'이 지난 5월 31일 하원을 통과했다. 올 2월 22일 주 하원의 Saldana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일정 크기 이상의 스크린 포함 전자기기'에 대해서만 특정 유해물질 사용을 2007년 1월부터 제한하도록 규정한 캘리포니아판 RoHS인 '폐전자제품재활용법'의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현재 '폐전자제품재활용법'은 4인치 이상의 스크린을 포함하고 있는 특정 전자제품에 대해 특정 유해물질(납, 수은, 카드뮴 및 6가크롬) 함량이 EU RoHS 지침에서 설정한 최대허용치를 초과할 경우 그 판매 및 유통을 금지토록 하고 있다. AB 2202는 이렇듯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유해물질 제한대상 제품을 EU RoHS 지침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이번에 하원을 통과하면서 AB 2202의 일부 규정에 대해 중요한 수정이 이루어졌다. 먼저, 유해물질 함유제한 규정 적용시기를 애초 제안한 2008년 1월에서 2010년 1월로 2년 더 연장했다. 또한, EU RoHS 지침에서 적용 예외로 인정하는 제품 및 부품을 동 법안에서도 똑같이 예외로 인정한다는 것을 명시했다. 마지막으로, EU 지역에서 시행되는 RoHS 지

침 이행과 관련해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 및 불일치 사항 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규정을 포함시켰다.

특히 하원 수정안에서는 법 집행 주무기관인 캘리포니아 유독물질관리부(DTSC)에 대해 EU 각 회원국에서 단일화된 법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영국의 가이드라인을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일정 크기 이상의 스크린 포함 전자기기만을 대상으로 특정 유해물질을 제한할 예정이던 캘리포니아판 RoHS가 점점 그 모태인 EU 법규와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EU 지역 내에서 단일화된 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영국의 DTI 가이드라인을 따를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많은 EU 회원국의 관망속에 영국이 주도적으로 RoHS 집행 가이드를 내놓고 있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이는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유사법규 시행을 준비중인 미국 내 다른 주 및 자치단체에서도 채용할 가능성이 많은 부분이다. 따라서, 미국판 RoHS 대응을 필요로 하는 업계는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영국쪽 자료를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이번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그 채택 여부를 두고 상원에서 검토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출처 | 캘리포니아 주의회, ElAtrack

→ EU 회원국별 RoHS 입법화 및 단속기관



LG전자 | 최광림 책임연구원

1. 머리말

2006년 7월 1일 RoHS 규제 시행을 앞두고, EU 각 회원국은 RoHS 시행과 관련한 입법을 추진하고 각 기업들이 RoHS 법규를 이행하는지를 감시·단속할 단속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각 회원국의 RoHS 단속기관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회원국별로 특색을 갖고 있으므로, 법규 시행이 임박한 현 시점에서 각 단속기관의 특성에 맞게 준비할 수 있도록 국가별로

입법기관 및 단속기관 현황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2. 회원국별 RoHS 입법화 및 단속기관

EU에 속한 각 회원국은 RoHS 단속기관으로 대부분 환경 관련 부서를 지정하고 있으나, 자국의 환경을 고려하여 단속기관을 보건, 안전, 통상 및 소비자 관련 부서를 지정한 국가들도 있다.

국가	입법화 기관	단속기관
오스트리아	Federal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Environment and Water Management (www.lebensministerium.at)	- RoHS 관련 일반적 평가 수행 : The Federal Environment Agency (www.umweltbundesamt.at) - 세부적 규정관련 생산자 적합성 관리 : The District Administrative Authorities (Bezirksverwaltungsbehörden)
벨기에	The Federal Public Service Economy, SMEs, Self-employed and Energy(www.mineco.fgov.be) and the Federal Public Service Health, Food Chain Safety and Environment(www.health.fgov.be)	The Federal Public Service Health, Food Chain Safety and Environment-DG Environment (www.health.fgov.be)
사이프러스	Ministry of Agriculture, Natural Resources and the Environment (www.moa.gov.cy)	Ministry of Agriculture, Natural Resources and the Environment, Environment Service
체코	Czech Parliament (www.psp.cz)	Czech Trade Inspection: Czech Inspection of Environment
덴마크	Ministry of the Environment (www.mim.dk/eng/)	Danish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www.mst.dk/homepage/)
에스토니아	Ministry of Environment (www.envir.ee/)	Ministry of Environment (www.envir.ee/)
핀란드	Ministry of the Environment (www.environment.fi)	Safety Technology Authority (www.tukes.fi)
프랑스	Principally by the Ministry for Ecolog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www.ecologie.gouv.fr)	Principally by the Ministry for Ecology and Sustainable Development(www.ecologie.gouv.fr)
독일	German Parliament (www.bundestag.de). Ministry responsible for drafting ElektroG: Federal Ministry for the Environment(www.bmu.de).	각 주별 형편에 따라 결정될 예정 * 예 : Bavaria에서는 The Local Trade Supervisory Offices가 업무수행 예정
그리스	Ministry of the Environment, Physical Planning and Public Works(www.minenv.gr)	EOEDSAP, yet for the time being the authority in charge is the GEDSAP (www.minenv.gr/anakyklosi/aim.html)
헝가리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Water (www.ktm.hu/)	The National Directorate for the Environment, Nature and Water (www.ovf.hu)
아일랜드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Heritage, and Local Government (www.viron.ie)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www.epa.ie)
이탈리아	Ministry of Environment (www.minambiente.it)	Ministry of Environment (www.minambiente.it)
라트비아	Ministry of Environment (www.bidm.gov.lv)	Ministry of Environment (www.bidm.gov.lv)
리투아니아	Ministry of Health(www.sam.lt/en/)	Ministry of Health(www.sam.lt/en/)
룩셈부르크	Ministry of the Environment (supervising the Administration of Environment) (www.environment.public.lu/)	Ministry of the Environment (www.environment.public.lu/)

국가	입법화 기관	단속기관
말타	Maltese Standards Authority (www.msa.org.mt)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네덜란드	VROM (www.vrom.nl)	VROM Inspection (for criminal sanctions : Public Prosecutor)
폴란드	Ministry of Economics and Labour (www.mgip.gov.pl)	General Inspector of Environmental Protection (www.gios.gov.pl)
포르투갈	The Environment Ministry (www.maotdr.gov.pt)	General supervision by the National Waste Institute(www.inresiduos.pt) 및 여러 단속기관 * 예 : Inspeccao-Geral das Actividades Economicas (IGAE), Inspeccao-Geral do Ambiente (IGA), Comissoes de Coordenacao e Desenvolvimento Regional (CCDR).
슬로바키아	Slovak Parliament (www.nrsr.sk). Ministerial Decrees transposed by Ministry of Environment of the Slovak Republic (www.lifeenv.gov.sk)	미정 * National control institute 가능성 있음
슬로베니아	The Ministry of Health-National Chemicals Bureau (http://www2.gov.si/mz/mz-splet.nsf)	The Ministry of Health-National Chemicals Bureau (http://www2.gov.si/mz/mz-splet.nsf)
스페인	Spanish Government (www.la-moncloa.es)	- National level : Ministry of Industry (www.mityc.es) and Ministry of Environment (www.mma.es) - Regional level (Madrid): Department of Environment of regional authority (www.madrid.org)
스웨덴	Ministry of Sustainable Development (www.sweden.gov.se/sb/d/2969)	Swedish Chemicals Inspectorate (www.kemi.se/default.aspx?id=550)
영국	DTI (www.dti.gov.uk/)	National Weights and Measures Laboratory (www.rohs.gov.uk)

3. 회원국별 단속기관의 주 활동 내용

각국은 RoHS 단속기관으로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기관들에게 단속권한을 부여해 운영할 예정이다. 따라서, 기존 기관들의 주 활동 내용 및 성향을 분석하여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단속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단속을 당했을 시 대응책을 강구하는데 올바른 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단속기관으로 지정된 기관들의 주 활동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가	단속기관 주 활용 내용
오스트리아	<p>Federal Environmental Agenc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환경보호 분야를 다루고 있음. 환경보호 및 환경관리에 대한 연방정부 단속기관 - 연방정부가 환경정책을 수립하는데 지원 - 기술생태학적(Technical-ecological) 규칙과 가이드라인에 대한 제안서 작성 <p>District Administrative Authorities (Bezirksverwaltungsbehörde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수하게 행정적인 성격을 지님 - 방사능 보호 법안(Radiation Protection Act)에 대한 행정 관리 - 방사능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시설에 대해 자격증 수여
벨기에	<p>The Federal Public Service Health, Food Chain Safety and Environment-DG Environmen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제품정책 고안(framing) - 지구온난화 가스 저감 - 화학제품 시장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이온화되지 않는 방사선 예방, 소음 예방에 대한 정책 수립 - 시장에 출시되고 인가되어 사용되는 제품들의 수행검사 - waste shipment 등록 및 monitoring - 국제적 환경정책을 following-up하고 해당 지역에 맞게 조정 - 북해 보호
사이프러스	<p>Ministry of Agriculture, Natural Resources and the Environment, Environment Servic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온난화 유발물질, 오존층 파괴물질, 비스 등의 화학물질 관리 - 통합 오염예방 및 관리, EMAS와 Eco-label 관련된 업무 수행 - 자연보호 및 관리, 폐기물/소음 관리 및 수질관리
체코	<p>Czech Trade Inspection; Czech Inspection of Environmen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 시장에 제품이나 재화를 판매하거나 공급하는 개인과 법인을 관리 - 내부 시장에 유통되거나, 수출되기 전에 제품을 승인하기 위해 재화의 출처(origin of the goods)를 제공 - 보건안전, 제품안전 및 서비스가 유지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정보가 제공되는지를 관리 감독
덴마크	<p>Danish EPA Chemical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충제와 생상물질 승인 - 살충제 연구 프로그램 - 신/기존 화학물질의 독성 및 위해성 평가 - 토양/수질/대기질 관리 - 화학물질 관련 법규 모니터링 - 위해(risk) 화학물질 관련 국가법규 및 국제적 법규 관련 업무 - 화장품 및 장난감을 포함한 소비자 제품 내의 화학물질 관리 - 화학물질 분야에서 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 EU 화학물질 전략에 대한 협의 활동
에스토니아	<p>구체적 단속기관 미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스토니아 환경부(Ministry of Environment)에서 단속 - 대기질 및 방사선 예방 - 환경성 평가 및 환경 감사와 관련된 업무 수행 - 환경 관련 법 조항 개발 - 지속가능한 기술력 증진 업무 수행 - 잔류성 유기물질 및 국가환경감시 프로그램에 대한 상담 - 잠재적인 위급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위해성평가 등의 위기관리 업무
핀란드	<p>Environmental management and technolog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 안전성과 신뢰성 분야에서 관리 및 개발 업무를 하는 전문가 조직 - 화학분야와 공정산업, 전기 안전성, 전자기기 안전성, 구조장차, 귀금속, 건축제품 및 법적 계약 분야 업무 수행 - 안전성 위협으로부터 인간, 재산 및 환경을 보호, 기술에서의 신뢰성 향상업무 수행 - 국내 및 국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법규 초안 제정에 참여
프랑스	<p>구체적 단속기관 미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ance의 The Ministry for Ecology and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단속
독일	<p>구체적 단속기관 미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주별 형편에 맞게 결정될 예정 예 : Bavaria에서는 The local trade supervisory offices가 업무 수행 예정
그리스	<p>EOEDSAP (The National Organization for the Alternative Management of Packaging and Other Waste, whose English acronym is NOAMPOW) (예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분간 GEDSAP에서 업무 수행
헝가리	<p>구체적 단속기관 미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ungary The National Directorate for the Environment, Nature and Water에서 단속
아일랜드	<p>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한 오염 가능성을 가진 대규모 활동이나 복잡한 활동에 대한 업무를 수행함 - 환경질에 대한 감시와 보고서를 작성하고 아일랜드 환경보호 관련 법규에 대응하는 지를 감독 - 환경성 자격증 수여 - 환경법 집행 - 환경 전략 계획 및 가이드 작성 - 환경성 상태를 감시하고 보고서 작성 - 환경성 연구 수행
이탈리아	<p>구체적 단속기관 미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탈리아 환경부(Ministry of Environment)에서 단속

국가	단속기관 주 활용 내용
라트비아	<p>구체적 단속기관 미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트비아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에서 단속
리투아니아	<p>구체적 단속기관 미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투아니아 보건부(Ministry of Health)에서 단속
룩셈부르크	<p>구체적 단속기관 미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룩셈부르크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에서 단속
말타	<p>The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소비자보호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에게 정보 제공, 무역 관행 감시, 소비자 불만 조사 및 소비자위원회(the Consumer Affairs Council)를 보좌 * 소비자보호부는 소비자 정책을 이행하고 소비자보호법을 실행하는 단속기관 * 소비자위원회는 소비자 권익을 향상시키고 보호하는 방안에 대한 정책을 공식화하는 부서에 대해 자문 및 권고
네덜란드	<p>VROM Inspection (for criminal sanctions : Public Prosecuto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관 권한 하에서 입법부에 권력 행사 - 타국가가 법규를 집행하지 시 조사하고 이를 보증함 - 관련 개발상황 동향 파악 - 국내 심각한 범죄를 감지하고 진압
폴란드	<p>The general Inspector of Environmental Protectio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보호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환경현황을 진단하는 중앙정부 단속기관임 - 환경 사용에 대한 조건을 형성하는 행정적 결정을 관리 - 투자의 지방분권 관련 진행에 참여 - 환경에 유해할 수 있는 장치투자 설립에 대한 절차에 참여 - 환경보호 설비 개발 관리 - 타 관리기관, 법규 집행국 및 환경보호 분야 처벌기관과의 협력 - 비환경적인 행위를 금지하는 결정 수립
포르투갈	<p>General supervision by the National Waste Institute 및 여러 단속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관 법령을 올바르게 이행하는지를 감시함 * 단속기관 예 : Inspecao-Geral das Actividades Economicas (IGAE), Inspecao-Geral do Ambiente (IGA), Comissoes de Coordenacao e Desenvolvimento Regional (CCDR).
슬로바키아	<p>단속기관 미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ational control institute 일 가능성이 큼
슬로베니아	<p>The Ministry of Health- National Chemicals Burea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 관리 - 화학물질 제조, 무역 및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 - 기존/신규 화학물질, 금지/제한 화학물질, POPs, 살생물제(Biocides), 화학무기 등 - 화학물질 위해성평가 - 화학물질 감시 - 화학제품 등록
스페인	<p>구체적 단속기관 미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적 차원과 지역적 차원(마드리드)으로 나누어 단속
스웨덴	<p>Swedish Chemicals Inspectorate는 지속가능개발부 산하 감독기관으로 환경질 향상에 기여하는 법규와 법칙을 촉진하기 위해 스웨덴과 EU에서 업무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 등록 관리 - DB 보존 - 살충제 승인 -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 - 적용 가능한 법규에 기업이 대응하는지를 검토 - 지역 단속기관 및 타국 지원 - 보고서, 출판물 및 저널 발행
영국	<p>National Weights and Measures Laboratory는 모든 무역 측정이 정확하고 합병 적이며 판매자/구매자에게 공정한지를 보증하는 EU DTI의 행정국(Executive Agency)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 측정 법안과 EEC 법안 하에 측정법규 준비 - 영국을 유럽공동체와 합법적 방법론 국제기관의 대표 - 무역 측정에서 측정성 유지 - 지침과 표준에 대한 적합성 취득

4. 맺음말

지금까지 EU 회원국별 단속기관에 대해 살펴 보았다. RoHS 단속에 따른 기업의 이행에 있어서는 단속기관의 성향에 따라 단속절차나 판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무역 대상 국가에 속한 단속기관의 성향을 파악하고 그 성향에 맞도록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미국, 6월부터 디젤연료의 황 함량 기준치 15ppm으로 대폭 강화

미국 연방환경청(EPA)은 이번 6월부터 석유 정제 사업자 및 연료 수입업자에 대해 디젤 연료 중의 유황 함량 기준치를 현재의 500ppm에서 15ppm으로 대폭 강화하도록 요구하게 된다. 이 새로운 규칙은 부시 행정부의 재생가능 에너지원 및 초저유황 디젤연료(ULSD, Ultra Low Sulfur Diesel)와 같은 청정연료 촉진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조치다.

이 규칙이 전면 실시되면, 질소산화물(NOx) 및 입자상물질(PM) 저감을 통한 환경보호 촉진효과뿐만 아니라 약 8천건 이상의 조기사망(premature death)과 수만 건의 호흡기질환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EPA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ULSD이 자동차, 트럭, 버스의 오염제거 기술 개선을 촉진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는 미국 내 일반 소비자가 ULSD 및 청정 디젤 기술을 도입한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출처 | 미국 EPA

일본 JEITA, 무연땜 실용화 검토 성과 보고회 개최

전자전자제품에 납을 포함해 특정 유해물질을 규제하는 EU RoHS 지침이 오는 7월 1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같은 시점에 일본도 일본판 RoHS에 해당하는 J-MOSS 규제 즉, 7개 전기전자제품에 6대 유해물질 함유정보 표시를 의무화하는 조치가 시행된다.

일본 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JEITA)는 1998년부터 실장업체, 실장기 제조업체, 납땜재료 생산업체, 부품·디바이스 제조업체 등 관련 업체들이 참여한 무연땜(lead-free solder) 실용화를 위한 프로젝트 그룹을 설치해 운영해 오고 있다. 이 프로젝트 그룹에서는 무연화를 위한 조사·연구·표준화 등에 대한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2000년 이후 매년 중반기에 연례 보고회를 개최해 그 동안의 성과를 공표하고 있다. 올 해에는 무연땜 문제의 완전해결 또는 새로운 대처방

안 등에 대한 조사·연구·표준화 결과에 대한 보고회를 오는 7월 11일과 14일 각각 동경과 오사카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보고회에서는 ▲ 무연땜의 업계표준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Sn-3Ag-0.5Cu 땜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차세대 무연땜으로 기대되는 Sn-Zn계, Sn-In계 및 Sn-Bi계 등의 저온무연땜 실용화 촉진 목적으로 수행중인, '저온 무연땜 기반기술 확립과 표준화 사업' 2차년도 성과, ▲ 기술적으로 해결이 어렵다고 인식되는 고 Pb함유 Sn-Pb 고온땜을 대체하고 대체고온 무연땜 개발 및 땜 대체 도전성 접착제 개발에 관한 '고온 무연땜 기술 개발 과제' 성과, ▲ JEITA 접속부품 표준화 위원회에서 진행해온 커넥터(connector) 등 외부압력에 의한 위스커(whisker) 발생문제에 대한 진행 성과, ▲ 플로우(flow)용 땜의 영역에서 많이 요구되는 Sn-3Ag-0.5Cu 땜을 대체할 수 있는 저비용 제2세대 무연땜 표준화 방안 등의 내용이 발표될 예정이다. 출처 | 일본 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JEITA)

HP, "폐기전 재활용 비용 예상보다 적다"

전자제품 제조업체인 휴렛팩커드(HP, Hewlett Packard)가 지난 6월 2일, 생산자의 폐기전제품 무료회수 및 재활용 시스템 운영을 의무화한 폐기전처리지침(WEEE) 시행 10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지침 이행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에 대한 새로운 데이터를 발표했다. HP의 조사결과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EU 전역에서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 비용이 애초에 예상했던 비용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HP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유럽 지역 소비자들은 전자제품 재활용 공정이 항상 높은 비용을 수반한다는 인식을 가져왔지만, 오스트리아, 독일 및 스페인과 같은 국가에서는 수반된 비용이 겨우 몇 유로센트(평균 약 400원)정도에 불과했다"고 조사결과를 밝혔다.

이 조사에 따르면 재활용 비용이 지역별 재활

용업체들의 시장경쟁 수준에 따라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프린터의 경우 0.43~4.56유로(약 520~5,500원 상당), 노트북 컴퓨터의 경우 0.07~6유로(약 85~7,300원 상당) 정도로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였다. 벨기에, 스위스 및 아일랜드와 같이 재활용업체간 경쟁이 거의 없는 국가에서 재활용 비용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출처 | EU 집행위, 휴렛팩커드

UNEP, 국제 환경협약 준수이행 위한 매뉴얼 공표

유엔환경계획(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이 다자간 환경협약 이행 확보를 위해 '다자간 환경협약 준수·이행에 관한 매뉴얼'을 지난 6월 2일 발간했다. 수 십년 간 국제사회는 의정서 및 기타 다자간 환경협약(MEA)과 같은 국제조약 체결에 관심을 기울여 왔으나, 이제 그 관심은 이러한 다자간 협약 이행을 얼마나 확보해 나갈 것인가 하는 방향으로 옮겨왔다. 그 이유는 명확한데, 많은 국가들이 당사국으로 참여한 많은 협약에 따른 환경공약을 이행하는데 고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지, 좀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이행방법은 무엇인지, 한정된 자원으로 얼마나 완전한 이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등 많은 나라들이 여러 문제를 떠안고 있다. 이렇듯 다자간 협약에 따른 약속 이행에 있어 많은 문제에 직면한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UNEP은 이 매뉴얼을 공표한 것이다.

이 매뉴얼은 2002년 2월 UNEP 관리이사회가 승인·공표한 '다자간 환경협약의 준수 및 이행에 관한 가이드라인' 활용을 촉진함과 동시에, 이 가이드라인을 보완하는 것으로 각국 정부, NGO, 기타 관련 기관 등 이해관계자들이 조약 준수이행을 위해 활용 가능한 여러 접근법의 예를 비롯해 개별 접근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 등을 포함하고 있다.

출처 | 유엔환경계획(UNEP)

공지사항

- ⇒ 「해외환경규제동향」에서는 '전문가 리포트' 코너에 게재할 원고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여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 ⇒ 본지의 궁금한 사항이나 해외 신규제에 대한 제보가 있으신 분은 아래 「친환경상품진흥원」내 TEN사무국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TEN 온라인정보시스템(www.ten-info.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회의 정보

- ① 6.21. ~ 6.22. 2006년 기업과 지속가능발전 컨퍼런스 (미국 워싱턴D.C.)
- ② 6.26. 아시아 전자산업 에코디자인 컨퍼런스 (인도 뉴델리)
- ③ 6.27. ~ 6.30. IFAT China 2006 (제2회 환경보 국제페어) (중국 상하이)
- ④ 6.28. ~ 6.29. 2006년 탄소관리 전략 세미나 (벨기에 브뤼셀)
- ⑤ 6.28. ~ 6.30. 제1차 국제 배터리 재활용 회의 (스위스 인터라켄)
- ⑥ 7.11. 일본 JEITA 무연땀 실용화 검토 성과 2006년 보고회 (일본 동경)
- ⑦ 7.12. ~ 7.14. 제12차 21세기 도시교통 및 환경 국제 컨퍼런스 (체코 프라하)
- ⑧ 7.17. ~ 7.19. 국제 실내환경질(Indoor Environment Quality) 컨퍼런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2006년 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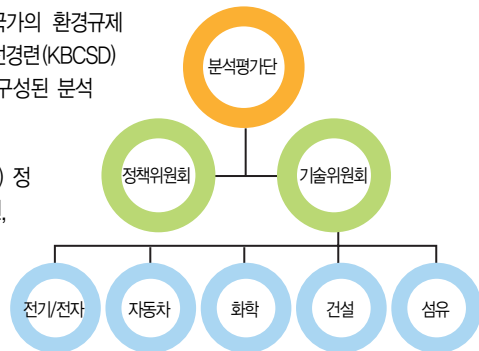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②	③	④⑤			

2006년 7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⑥	⑦		
		⑧				

TEN시스템운영체제

- ➔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TEN)」는 우리나라 주요 교역대상국가의 환경규제 동향을 조기 수집하여 기업체에 전파하기 위하여 환경부와 전경련(KBCSD)이 구축한 정보네트워크로 50여명의 각 산업별 전문가로 구성된 분석평가단을 통해 대응방안 및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TEN)」의 해외(유럽, 미국, 중국, 일본) 정보 수집, 분석, 평가 및 네트워크 운영은 친환경상품진흥원, KOTRA,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발행처 :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사무국
 주 소 :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613-2 친환경상품진흥원,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사무국
 전 화 : 02-358-6800 (#232) | 팩 스 : 02-358-8560 | 이메일 : jung60@koeco.or.kr

